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탄핵소추 각하 시 보조금 감액 〉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2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탄핵소추 각하 시 보조금 감액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22인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2월 8일, 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167일 만에 기각된 바 있고, 2024년 5월 30일에는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기각된 바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도 9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종 기각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탄핵소추 심판 청구 사건의 남발로 국정 혼란과 정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탄핵소추안이 국회 다수당의 주도하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최장 180일(6개월)간 정지되고, 그 기간 업무 기능의 마비로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

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탄핵소추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 탄핵소추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동시에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탄핵소추 각하 시 보조금 감액(안 제29조제6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의 감액)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설>	6.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 심판을 주도한 정당의 보조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금액이며, 선거보조금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에 각 선거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보조금을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 당에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을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정 당에 지급하는데, 현행법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5석 이상의 정당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각 총액의 100분의 5씩을 배분·지급받도록 하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 중 일정 요건¹⁾을 충족하는 정당은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각 총액의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받도록 하며, 보조금의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의석수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받도록 하고 있음.²⁾

-
- 1)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 2) 보조금의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100분의 50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보조금 지급 기준>

조항	배분 대상 정당		배분 비율
제27조 제1항	교섭단체 구성 정당		100분의 50 균등
제27조 제2항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아닌 5석 이상 정당		100분의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정당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2% 이상	100분의 2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이 2% 미만이나 의석 정당 중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득표수 비율 0.5% 이상	
제27조 제3항	의석을 가진 정당		잔여분의 100분의 50×국회의석수 비율
			잔여분의 100분의 50×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당이 탄핵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는 탄핵심판청구가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에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각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2024. 9. 5., 의안번호 제3726호)의 입법화

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김기현의원 대표발의)>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8조의2(탄핵소추의 요건) 탄핵의 소추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및 직무와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어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적일 것 2.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여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경우가 아닐 것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제53조(결정의 내용) <u><신 설></u>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심리 후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1.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① (생 략) ② (생 략)	2. 제48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갖 추지 못한 경우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다만,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현행 「정치자금법」은 보조금의
감액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의 회계보고 허위·누락, 규정에
의한 용도 외 사용, 회계보고 규정 위반 등 재정관련 사항으로 규정하
고 있는 바,³⁾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탄핵심판 청구 각하가 보조금 감액 사유
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규정
하는 것이 법의 목적⁴⁾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
임.

3) 「정치자금법」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
위·누락한 경우에는 허위·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
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
하는 금액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또는 청년추천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
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
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
는 금액

4) 「정치자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
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탄핵 소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감액할 것인지는 헌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행위와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